

『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9월 1일

나. 발 의 자 : 김정곤, 권기만, 김근아, 김상조, 김인배,
박교상, 안장환, 양진오, 윤종호, 정근수(10인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9월 7일

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정 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라 구미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·대응하고,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구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화학물질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화학사고 고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9조 ~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화학물질관리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보공개,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에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